

사단법인 대한유도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 19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삼덕회계법인

목 차

I.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
II.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4
운영성과표	5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6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귀중

우리는 별첨된 사단법인 대한유도회(이하 "협회")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회의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실체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사항

협회는 공익법인회계기준 부칙 제3조(재무제표 작성 적용례)에 따라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사단법인 대한유도회의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상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회계처리기준과 보고서의 배포 및 이용제한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협회의 회계처리기준을 기술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사단법인 대한유도회가 상기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재무보고조항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무제표는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고서는 사단법인 대한유도회와 대한체육회만을 위한 것이며 그밖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배포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삼 덕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이 용 모



2019년 5월 27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9년 5월 27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재 무 제 표

사단법인 대한유도회

제 19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협회가 작성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대한유도회 회장 김진도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전 화) 02-422-0581

재 무 상 태 표
제 19(당)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대한유도회

(단위 : 원)

과 목	제 19(당)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 산			
I. 유 동 자 산	7,510,257,576	7,510,257,576	-
(1) 당 좌 자 산	7,510,257,576	7,510,257,576	-
현금및현금성자산	967,020,974	967,020,974	-
단기금융상품(주석 3,4)	6,419,362,773	6,419,362,773	-
미수금	5,226,594	5,226,594	-
미수수익	108,705,615	108,705,615	-
당기법인세자산	9,941,620	9,941,620	-
II. 비 유 동 자 산	80,641,086	80,641,086	-
(1) 유 형 자 산(주석 5)	80,641,086	80,641,086	-
비품	13,657,950	13,657,950	-
감가상각누계액	(12,780,172)	(12,780,172)	-
경기용장비	244,048,657	244,048,657	-
감가상각누계액	(164,285,349)	(164,285,349)	-
자 산 총 계	7,590,898,662	7,590,898,662	-
부 채			
I. 유 동 부 채	157,728,628	157,728,628	-
미지급금	146,405,102	146,405,102	-
예수금	11,323,526	11,323,526	-
II. 비 유 동 부 채	26,916,004	26,916,004	-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6)	302,715,730	302,715,730	-
퇴직연금운용자산(주석 6)	(275,799,726)	(275,799,726)	-
부 채 총 계	184,644,632	184,644,632	-
순 자 산			
I. 기 본 순 자 산(주석 7)	6,626,505,818	6,626,505,818	-
II. 보 통 순 자 산(주석 7)	779,748,212	779,748,212	-
잉여금	779,748,212	779,748,212	-
순 자 산 총 계	7,406,254,030	7,406,254,030	-
부 채 와 순 자 산 총 계	7,590,898,662	7,590,898,662	-

"별첨 주석 참조"

운 영 성 과 표
제 19(당)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대한유도회

(단위 : 원)

과 목	제 19(당)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I. 사업수익(주석 8)	4,361,238,497	4,361,238,497	-
기부금수익	229,000,000	229,000,000	-
보조금수익	2,856,147,987	2,856,147,987	-
투자자산수익	134,344,640	134,344,640	-
기타수익	1,141,745,870	1,141,745,870	-
II. 사업비용(주석 9)	4,213,354,979	4,213,354,979	-
사업수행비용	3,689,097,020	3,689,097,020	-
일반관리비용	524,257,959	524,257,959	-
III. 사업이익(손실)	147,883,518	147,883,518	-
VI. 사업외수익	8,551,795	8,551,795	-
이자수익	3,626,348	3,626,348	-
퇴직연금운용수익	4,925,447	4,925,447	-
V. 사업외비용	386,600	386,600	-
외화차손	600	600	-
유형자산손상차손	386,000	386,000	-
VI.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64,556,406	64,556,406	-
V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64,556,406	64,556,406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운영이익(손실)	156,048,713	156,048,713	-
IX. 법인세비용	-	-	-
X. 당기운영이익(손실)	156,048,713	156,048,713	-

"별첨 주석 참조"

주석

제 19(당)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대한유도회

1. 협회의 개요

사단법인 대한유도회(이하 "협회")는 유도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하고 명량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경기인 및 그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당기 말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협회의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기준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기준 시행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전기재무제표는 협회의 회계처리규정 및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기준 부칙 제3조(재무제표 작성 적용례)에 따라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협회의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

1) 공통사항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다만, 최초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합니다.

최초 인식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자산의 경우에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부채의 경우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며,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로서 명목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현재가치평가기법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채무조정을 제외하고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유가증권 제외)의 양도의 경우에, 협회가 금융자산 양도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협회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금융자산을 제거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유가증권 제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방법 등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은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과 매입할인 등을 취득원가에 가감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 가격상당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 등에 의해 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고, 이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으며,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과 목	내 용 연 수
비품	5년
경기용장비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표시방법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및 정부보조금 등은 해당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3)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기준 제26조에 따른 '기부금 등'으로 보아 실제 받는시점에 사업수익으로 인식하고, 해당 보조금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사업수익 및 사업비용

1) 사업수익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말하며, 공익목적사업수익과 기타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 또는 배당수익과 처분손익 등이 공익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등의 수익은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하고 있으며,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등에 대해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사업비용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말하며,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익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비용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일반관리비용은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모금비용은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및 기타사업비용에 대해서는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장학금, 지원금 등을 포함하며, 인력비용은 공익법인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시설비용은 공익법인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며, 기타비용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합니다.

(5) 퇴직급여

협회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운용되는 자산은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과목으로 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6) 외화 환산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합니다. 다만,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그 외환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외화표시 매도가능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동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순자산

공익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순자산이라 하며,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기본순자산이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말하며, 영구적 제약이란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보통순자산이란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을 말하며, 보통순자산은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적립금은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두는 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 등이 해당한다. 순자산조정이란 순자산 가감성격의 항목으로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이 포함된다.

(8) 추정의 사용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경영자는 자산 및 부채의 금액 및 충당부채 등에 대한 공시, 수익 및 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많은 합리적인 추정과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매출채권 및 충당부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평가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9) 자산손상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순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사용가치란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과거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10)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 손실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손실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 기재하고 있습니다.

(1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2) 전기오류수정손익

전기 이전의 오류는 당기 운영성과표에 사업외수익 또는 사업외비용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다만 중대한 오류는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사용이 제한된 예금

당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금융기관	당기말	비고
단기금융상품	수협은행	525,451,978	대한체육회 질권
단기금융상품	KEB하나은행	5,829,324,537	대한체육회 질권
합계		6,354,776,515	

4. 단기금융상품

당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금융기관명	만기일	이자율(%)	금액
수협은행	2019.04.03	2.24	525,451,978
수협은행	2019.04.03	2.24	64,586,258
KEB하나은행	2019.04.03	2.22	3,798,198,105
KEB하나은행	2019.04.03	2.22	2,031,126,432
합계			6,419,362,773

5. 유형자산

당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기초 장부가액	취득액	감소 (대체)액	감가상각비	기말 장부가액
비품	1,665,600	-	(36,000)	(751,822)	877,778
경기용장비	109,979,778	5,321,657	(350,000)	(35,188,127)	79,763,308
합계	111,645,378	5,321,657	(386,000)	(35,939,949)	80,641,086

6. 퇴직급여충당부채

(1) 당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내역	당기
기초잔액	250,544,980
지급액	-
설정액	52,170,750
기말잔액	302,715,730

(2) 당기말 현재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원리금보장형	275,799,726

(3) 당기 중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내역	당기
기초잔액	242,273,696
지급액	-
불입액	33,526,030
기말잔액	275,799,726

상기 금액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교보생명 보험주식회사에 이에 대한 운용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7. 순자산

(1) 순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과 목	통 합				공익목적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			
	기본순자 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 정	기본순자 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 정	기본순자 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 정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당기초	6,627	-	624	-	6,627	-	624	-	-	-	-	-
수정후 순자산	6,627	-	624	-	6,627	-	624	-	-	-	-	-
당기운영이익	-	-	156	-	-	-	156	-	-	-	-	-
당기말	6,627	-	780	-	6,627	-	780	-	-	-	-	-

(2) 당기말 현재 기본순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취득원가
법인화적립금	2,031,126,432
진흥기금적립금	4,323,650,083
자체적립금	271,729,303
합 계	6,626,505,818

8. 사업수익

(1) 당기 중 보조금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 기
대한체육회	2,829,852,887
국민체육진흥공단	5,995,100
전북체육회	20,300,000
합 계	2,856,147,987

(2) 당기 중 보조사업별 정부보조금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보조사업 구 분	예산액	교부· 지급	발생이자	집행 (주1)	반환 (주2)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	28,560,000	26,924,000	-	26,924,000	-
국가대표 강화훈련	987,192,000	987,109,000	787	987,109,000	787
국내대회 개최지원	20,300,000	20,300,000	1,264	20,300,000	1,264
국내종합대회지원	7,400,000	7,400,000	3	7,400,000	3
국제대회 국내개최지원	139,000,000	137,535,500	-	137,535,500	-
국제종합대회지원	35,467,660	35,467,660	-	35,467,660	-
꿈나무선수육성	139,913,980	135,177,650	2,767	135,177,650	2,767
상임심판 지원사업	275,520,000	275,036,800	91	275,036,800	91
스포츠스타체육교실	6,000,000	5,995,100	5	5,995,100	5
스포츠영재사업	213,778,503	158,712,887	188	158,712,887	188
올림픽대책특별지원	359,454,800	348,006,527	3,532	348,006,527	3,532
청소년대표육성	127,638,000	126,535,701	344	126,535,701	344
체육지도자시험	600,000	600,000	-	600,000	-
회원종목단체지원	340,520,920	306,725,550	177	306,725,550	177
후보선수육성	293,612,000	284,621,612	7,361	284,621,612	7,361
합 계	2,974,957,863	2,856,147,987	16,519	2,856,147,987	16,519

(주1) 보조금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2)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자체사업	1,141,745,870

9. 사업비용

(1) 사업수행비용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세부사업명	금 액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수당	1,020,032,000
대표팀 촌외 및 국외훈련비	429,242,097
후보선수 국내외훈련비	289,891,996
꿈나무선수훈련비	135,177,650
청소년대표훈련비	127,151,701
체육영재훈련비	172,048,084
국제대회파견비	330,940,642
국내대회개최비	60,690,343
상임심판사업비	275,036,800
심판 및 지도자강습회	30,934,340
지원사업비	353,870,000
유도지발간비	96,000,000
기타사업비	368,081,367
합 계	3,689,097,020

(2)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사업수행비용	-	-	65,081,458	3,624,015,562	3,689,097,020
일반관리비용	-	388,001,330	751,822	135,504,807	524,257,959
합계	-	388,001,330	65,833,280	3,759,520,369	4,213,354,979

10.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

당기말 현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보증제공자	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처
서울보증보험(주)	신원보증	2018-03-26 ~ 2019-03-25	400,000,000	대한유도회

11. 대의원총회가 승인한 재무제표

협회의 2019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므로 본 보고서상의 재무제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